

2020년 평창 군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18
----------	----

제출년월일 : 2006. 10.

제출자 : 평창군수(지역도시과장)

1. 제안이유

- 가. 평창군지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암면 황계리 일원에 황계 도시기본 계획구역의 면적6.597km²에 대해 수립(공고일자 : 1994년10월25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 나.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편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행정구역(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금회 군기본계획 면적 범위를 평창군의 행정구역 면적인 1,463.680km²로 조정하여 평창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평창 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가. 평창군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를 60,000명으로 설정 하였으며,
- 나. 군기본계획구역은 평창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1,463.680km²)을 대상으로 수립 하여, 평창군의 도시 미래상 확립 및 경쟁력있는 공간체계를 위해 평창군을 3 개권역에 의한 3개 지역중심생활권, 5개 거점생활권으로 구축하였습니다.
- 다. 토지이용계획은
1. 생활권역별 목표연도 정주인구를 감안하여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 전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2. 평창군의 토지이용 실태파악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2020년 평창군 미래상 실현에 적합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라. 교통계획에 있어서

1. 평창군 관내를 통과하는 연장 53.5km(4차선) 영동고속도로를 수용
2. 평창군 관내 통과하는 원주 ~ 강릉간 철도노선계획을 수용(연장 53km)중서 북부권 및 동북부권의 주요관광자원과 연계된 순환형 관광경철도 계획 및 순환도로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도모
3. 국도 3개노선(31호,42호,59호)에 대해 4차선 확장 및 선형변경 계획반영
4. 지방도 4개노선(408호,410호,424호,456호)에 대해 도로 확포장 및 선형변경 계획반영
5. 진부에서 도암면내 관광지(알펜시아리조트 및 용평리조트등)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부도시지역에서 알펜시아리조트간 연계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마. 공원계획에 있어서

1. 오대산국립공원 면적 13,284km²에 대해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립공원으로 반영
2. 군관리계획 및 지정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중 봉평 제1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는 면적변경 없이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봉평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봉평 근린공원내 부지 32,730㎡축소)

바. 경관계획에 있어서

1. 자연이 숨쉬는 역사, 문화, 관광중심도시라는 경관테마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의 경관지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 가. 2006. 8. 31 :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개최
- 나. 2006. 9. 1 ~ 14 : 주민공람 (※ 제출의견 없음)
- 다. 2006. 10 : 군의회 의견청취

▣ 2020년 평창군기본계획(안) 결정 개요

- 별첨 참조

▣ 관련법규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